

參 考 報 告

(게임사-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)

1

게임선포

□ 법령체계 : 헌법·게임법

○ 헌법 제77조 : 게임선포권자(대통령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)

- 제1항 :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임을 선포할 수 있다.
- 제5항 :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○ 게임법 제2조 : 게임의 선포 절차 등

- 제5항 : 대통령이 게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6항 :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게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.

□ 주요 쟁점 사항

○ 국회가 게임해제 요구 시 대통령 거부 권한은?

-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게임해제를 요구할 경우, 대통령은 거부권한이 없음
- 또한, 게임법 제11조에도 국회가 게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게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

○ 게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 시 대책은?

- 과거 군의 폐해로 국민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국민의식수준에 부합된 게임이 시행되어야 함
- 또한, 정부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, 이는 우리 부대 합수본부 임무 수행 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

□ 법령체계 : 계엄법·계엄사령부 직제령

○ 계엄법 제5조 :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

- 제1항 :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제2항 :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.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.

○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3조 :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및 참모장

-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.

□ 주요 쟁점 사항

○ 계엄사령관에 육·해·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?

- 일각, 전시계엄은 군사작전지원 목적이 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까지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 의견을 제기함
 - * 한민구 前 장관,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의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타당성 검토 지시('17.4월)
- 계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중 임명토록 되어 있어 법적문제는 없으나 작전지휘권과 직제상 계엄업무를 소관하는 합참의장이 수행 ↔ 동원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각 군 총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음

○ 계엄사령부 치안처(국.조사본부)와 우리 부대와의 관계는?

- 치안처 : 수사과, 정보과, 공안과, 교통과, 사이버수사과로 편성
 - 주민차량통제, 공안, 범죄단속·수사, 정보활동 등 수행
- 합수기구 미설치 시 정보·수사기관 조정·통제 권한은 치안처 보유
 - 설치 시 정보·수사기관 조정·통제 업무는 합수기구로 이관
- * 설치시기 : 치안처(계엄선포시 자동설치)/합수기구(계엄선포시 의명설치)

□ 법령체계 : 계엄사령부 직제령

○ 계엄사령부직제령 제7조 : 합동수사기구의 설치 및 합수본부장 임명 등

- 제1항 :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.
- 제2항 :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.
- 제3항 :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,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·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, 대통령이 지휘·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,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.

□ 주요 쟁점 사항

○ 합수본부장 임명권자는?

-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에 의거, 합수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추천으로 대통령(전국계엄) 또는 국방부장관(지역계엄)이 임명
 - * 단, 지역계엄이더라도 대통령이 지휘·감독하는 경우 대통령 임명

○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(우리 부대)의 권한 및 한계는?

- 경비계엄 : 평시와 동일하게 수사·재판권이 적용
- 비상계엄
 - 특별조치권이 발령된 경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위반자 체포 가능(단, 사후 영장 필수)
 - 형법상 내란·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 확대 가능(군사법원법 제3조)

○ 합수본부(단) 운영관련 조직보강 소요는?

- 2022년 UFS 연습시 前 장관님께서 디도스공격에 대한 군 대응 관련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부재에 대해 언급
- 사이버 범죄 급증 추세 고려시 합수본부 예하에 사이버 수사국 편성, 기관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업무를 통합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

4

기타 고려사항(계엄·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)

□ 법령체계 :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

-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27조: 정보센터 설치, 구성 및 운영

군사비밀
(제2항)

-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28조: 합동정보조사팀 운영

군사비밀
(제4항)

□ 주요 쟁점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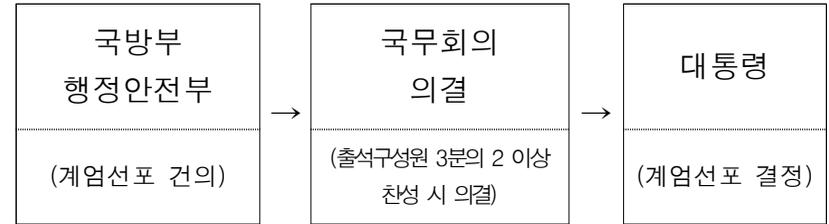
- 계엄-통합방위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가?

• 통합방위 사태와 계엄은 별개의 개념으로 적의 침투 및 도발과 국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선포될 수 있음
* (예) 적 침투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시 주민소개 등 통제 불능→ 지역계엄 발령 가능

- 계엄-통합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에 발령시 우리 부대 제한사항?

• 단위부대(방첩과)의 경우 사안에 따라 ①합동수사단, ②지역합동정보조사팀 간사, ③지역정보센터 간사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 해야함
• 단위부대가 각각의 임무 수행시 장소 선정 및 인력 운영 등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지 계획의 완전성·실행력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함

참고1. 계엄의 선포 절차



참고2.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

○ 대통령

- 전시·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선포
- 계엄선포 시 국회 통고
- * 전국 계엄선포 혹은 직접 지휘·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○ 국방장관

-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께 계엄 선포·해제 건의

○ 계엄사령관

- 계엄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임무 수행
- * 단,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·감독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임무 수행
- 계엄지역 내 행정·사법기관 지휘 감독

참고3. 계엄의 범위 및 계엄사령관 지휘·감독 책임

○ 전국계엄 : 대통령

○ 지역계엄 : 국방장관, 필요시 대통령

참고4.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비교

구분	계엄	
	경비계엄	비상계엄
목적	공공의 안녕질서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사상 필요에 따름 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
선포요건	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	적과 교전상태·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·사법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 시
계엄사 권한/한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사관련 행정·사법 사무관장 *행정·사법기관 지휘·감독 • 수사·재판권은 평시와 동일 (단,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·감독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행정·사법 사무 관장 *행정·사법기관 지휘·감독 • 군사상 필요시 체포·구금·압수·수색·거주·이전·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*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/사법처리 *상기내용 위반자 체포 후 군사법원 회부
선포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60.4.19학생의거(서울) • '61.5.16군부쿠데타(전국) ≡비상계엄 시행 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주폭동 • '48.여수순천반란(여수순천) • '70.10월 유신(전국) • 부산소요사태 • '79.10.26사태(전국) 등 ≡총 9회 비상계엄 발령

참고5. 헌법 제77조 1,2,3,4,5항

- 제1항 대통령은 전사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
- 제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.
-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**특별한 조치***를 할 수 있다.

↳ * 계엄법시행령 제4조 :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등

-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대통령(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을경우 국방부 장관) 승인 필요
-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선조치 후추인(추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없이 특별조치 해제)

-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-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참고6.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('80.5.17./10.26.사태)

계엄포고령 10호 전문('80.5.17)

-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
 - 가.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**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.**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단,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.
 - 나. **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**을 받아야 한다.
 - 다. 각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.
 - 라.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**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.**
 - 마. **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.**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
 - ① 전·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
 - ② 복귀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
 -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.
 - 바.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.
 - 사.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.

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·구금·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.

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

<강조사항>

-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.
- 언론·출판·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
-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.
-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.
- **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·구금·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.**

참고7. 계엄과 통합방위 구분

- 목적, 법령, 시행시기, 시행기관, 시행요소, 성격, 주민통제 범위 등을 구분